원상복구 합의서

임대인과 임차인은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0건물 0층 0호에 위치한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0000.00.00.자로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상복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다.

1. 원상복구할 범위 : *천정, 벽, 간판 등*

2. 원상복구에서 제외되는 범위 : *바닥,* *유리문, 화장실 등*

3.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.

4. 원상복구 기간은 0000. 00. 00.부터 0000. 00. 00.까지로 한다.

5.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, 해당 상가건물은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도 청구할 수 없다.

0000. 00. 00.

임대인 :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(인)

주 소 :

연락처 :

임차인 :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(인)

주 소 :

연락처 :